

대구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단1385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이승익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1. 2. 1. 접수 제1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소외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A는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이에 2017. 6. 13.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간 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이후, 2021. 12. 10.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A가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A가 2021. 6. 3.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21. 9. 15. 중소기업은행에 90,797,9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A는 피고 C와의 사이에 2021. 1. 29.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1. 2. 1. 접수 제1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A는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21하단1403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기초사실 다.항 기재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는 지급불능상태이었으므로 피고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3. 판 단

이 사건 신용정보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 소유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283,333,040원인데 비하여, D가 파산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의 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2021. 2. 1.경 채무액은 1,617,602,633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악의였던 사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평창등기소 2021. 2. 1.접수 제1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20. 1. 내지 4.경에 이미 차용금의 대부분을 빌려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별 지 목 록 1

1. 강원도 평창군 전455㎡
단, 지분 455분의 23

2. 강원도 평창군 전311㎡

이 상

